



### 주목할 만한 내용 :

#### 01. 조세 관리

- 본사 소재지 이외의 사업장에 대한 세금 신고

#### 02. 법인소득세 및 이전가격

- 과학 및 기술 기업에 대한 CIT 감면, 면제
- 근로자 자녀의 학비
-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된 퇴직연금
- CIT 30% 감면 적용된 소득;
- 이전가격 거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을 규정하는 제132/2020/ND-CP호 시행령의 주목할 만한 사항

#### 03. 부가가치세

-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VAT가 면제되지만 이자를 받으면 인보이스를 발급해야 함

#### 04. 외국인 계약자세

- 국제 조약에 따라 FCWT 적용
- 외국인 계약자와 계약 종료시 FCWT 확정 신고
- 해외 협회에 대한 회원비
- 제조 및 설치 서비스에 대한 FCWT

#### 05. 무역 및 관세

- EVFTA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P/O") 제출 기한
- EVFTA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P/O) 자체 발급
- 제134/2016/ND-CP호 시행령을 수정·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에 따른 수출가공기업(EPE)에 대한 감사 및 모니터링 조건을 충족함에 대해 관세당국에 의해 인정을 받기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처리
- 국내 기업에 임대된 EPE의 금형에 대한 관세/VAT 정책

## 조세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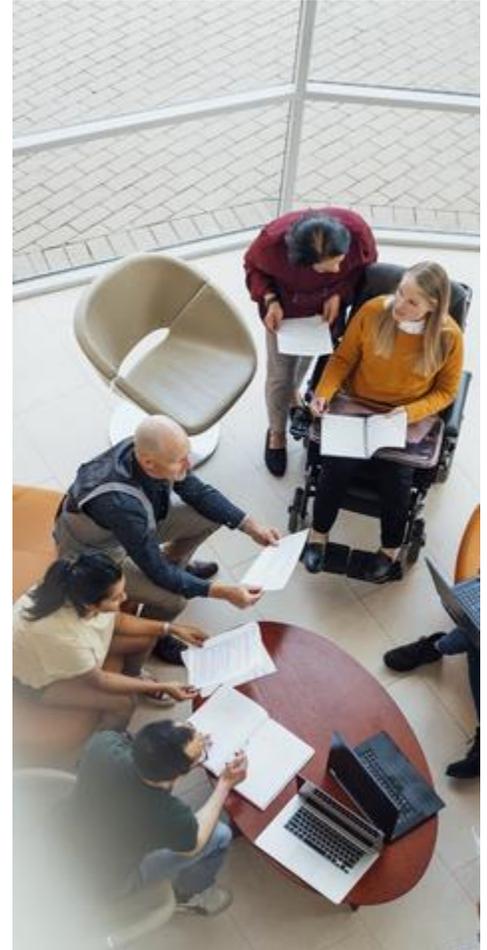


### 본사 소재지 이외의 사업장에 대한 세금 신고

제38/2019/QH14호 조세관리법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본사 소재지와 다른 지방들에서 사업을 활동하는 경우 (부속 사업장 또는 지점 형식) 본사 소재지의 관리 세무국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신고하고 (제126/2020/ND-CP호 시행령에 명시된 경우 제외) 부속 사업장 혹은 지점이 소재하는 지방의 세무국에 세금 할당표를 제출해야 한다 (있을 경우).

현재 재무부는 제38/2019/QH14호 조세관리법을 안내하는 제126/2020/ND-C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시행규칙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그중에 세금신고 및 세액할당을 안내할 예정이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1월28일 제3620/CTHN-TTH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법인소득세 & 이전가격



### 신규 문서

####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CIT 감면, 면제.

2021년 01월 11일 재무부는 정부의 제13/2019/ND-CP호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CIT 면제, 감면에 관한 제03/2021/TT-BTC호 시행 규칙 ("제03호 시행규칙")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규정된 인센티브 기준을 충족하며 유관기관으로 부터 과학기술 인증을 부여 받은 기업은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 4년간 세금 면제, 9년간 세금 50% 감면). 세금 면제, 감면 기간은 인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인증서를 취득한 연도로 부터 3년이내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4번째 연도로부터 감면, 면제 적용이 시작된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인센티브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연도의 경우, 12개월 미만의 첫번째 운영 연도의 경우, 인센티브 전환 및 과학기술 인증서상 상품 추가의 경우등에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03호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발효된다.

*(재무부의 2021년 1월 11일 제03 / 2021 / TT-BTC호 시행 규칙)*

### 지침 문서

#### 글로벌 자녀의 학비

베트남 국적인 근로자가 외국기업과 근로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소재한 회사에서 근무하게 파견된 경우 해당 직원의 자녀에 대해 베트남 회사에 의해 지급된 학비는 베트남회사의 CIT 과세소득 확정 시 공제 가능한 비용에 제외되며 직원에 대한 PIT가 면제되지 않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01월 15일 제1981/CTHN-TTHT호 OL)*

####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된 퇴직연금

외국 모회사가 베트남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파견하고 외국 모회사와 베트남 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베트남 회사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동안 해당 직원을 대신하여 퇴직 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할 경우 상기 납부액은 CIT 과세소득 확정 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계산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1월 28일 제3619/CTHT-TTH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법인소득세 및 이전가격

### 지침 문서 (cont.)

#### CIT 30% 감면 적용된 소득

기업은 제114/2020/ND-CP호 시행령 제1조에 해당하고 2020년 총 매출이 2,000억 VND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2020년 납부 CIT세액상 30% 감면이 적용된다.

2020년의 과세연도에 CIT감면은 법인소득세 법령 제18호 3항에 규정된 소득 (자본 이전; 부동산 양도, 투자프로젝트 이전 등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 을 포함 기업의 총소득에 적용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2월8일 제4858/CTHN-TTHT호 OL)*

#### 이전가격 거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을 규정하는 제132/2020/ND-CP호 시행령의 주목할 만한 사항

2021년1월27일 세무총국은 중앙직할시 및 성의 세무국에 제271/TCT-TTKT호 OL("제271호 OL")을 발행하여 이전가격 거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조세 관리에 관한 제132/2020/ND-CP호 시행령 ("제132호 시행령")의 새로운 사항을 요약한다. 강조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제5조 2항에 의한 G & L 형식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을 수정.보완함;
- 유관기관의 협의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조세에 대한 국제협정 (International Agreements),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 보고실체 (Reporting Entity) 등을 포함한 용어에 대한 설명은 제4조에서 보완됨. 조세당국의 데이터베이스 (Database of Tax authorities) 에 대한 정의도 제4조 7항에서 추가됨.

- 제9조 4항에서 정상 가격 범위 (Arm's length range)가 백분위 35번째부터 75번째까지의 값으로 재정의됨;
- 제132호 시행령은 법인세 확정시 공제 가능한 순이자비용에 관한 제68/2020/ND-CP호 시행령 (제16조, 3항)의 규정 및 지침을 전체적으로 유지함;
- 제132호 시행령은 국가별 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 와 관련된 의무를 제18조 5항에서 자세히 규정함;
- 제271호 OL 6점에서 국가별 보고서의 데이터는 세금 부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다시 강조함. (제132호 제20조 1c항에 따름)
- 또한 제271호 OL에 따르면 재무부는 제132호 시행령을 안내하는 시행규칙을 발행하지 않음.

*(세무총국의 2021년1월27일 제271/TCT-TTKT호 OL 및 딜로이트 베트남의 2020년11월9일 및 2020년11월27일에 공유한 세무뉴스)*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지침 문서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VAT가 면제되지만 이자를 받으면  
인보이스를 발급해야 함**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개인대출"로 간주되며 VAT 부과된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가 이자를 받으면 회사가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한다. 인보이스에 이자 징수란 내용으로 기술해야 하고 세율, 세금과 관련 항목을 지워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1월 26일  
제3269/CTHN-TTHT 호 OL)*

## 부가가치세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외국인 계약자세



### 지침 문서

#### 국제 조약에 따라 FCWT적용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AIIB)의 소득은 제103/2014/TT-BTC호의 관리된 대상인데 아래와 같이 조건을 충족하면 국제조약에 따른 면세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 동의서 (즉, AIIB가 베트남에서 은행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운영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상태, 특권, 세금 감면등을 설명하기 위해 베트남 국가은행에 의해 AIIB에게 보내는 동의서)는 베트남 법정에 따라 국제 조약으로 간주됨;
- 본 국제 조약은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과 다르게 FCWT 면제 조항이 있음.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1월 8일 제1071/CTHN-TTHT 호 OL)*

#### 외국인 계약자와 계약 종료시 FCWT 확정 신고

OL은 회사가 외국인 계약자 (판매자)와 원칙 계약을 체결하고 각 거래마다 구매 주문서 (Purchase Order)를 추가로 서명하는 경우를 언급한다. 따라서 회사가 FCWT를 확정 신고해야 한지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강조된다:

- FCWT 신고는 각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또는 월간기준으로 (납세의무 발생한 경우) 진행됨; 및
- 계약서가 종료된 시 FCWT 확정신고가 진행되어야 함.

Deloitte가 관찰한 바와 같이 원칙 계약을 체결하고 각 주문서에 따라 구매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원칙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야 FCWT를 확정신고를 진행한다는 관점이 있다.

*(Ha Nam 세무국의 2021년 1월 15일 조세정책에 대한 OL)*

#### 해외 협회에 대한 회원비

업체가 구매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해외 협회에 가입하고 회원비를 지불하는 경우, 협회의 해당 소득은 제2.3조,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FCWT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롱안 세무국의 2021년 1월 19일 제185/CT-TTHT 호 OL)*

#### 제조 및 설치 서비스에 대한 FCWT

베트남 업체가 외국인 계약자와 기계·장비 납품과 제조·설치·커미셔닝 등과 같은 서비스의 가치를 분류해서 구매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외국인 계약자의 파견자에 의해 베트남에서 수행된 제조·설치·커미셔닝 서비스에 대한 FCWT가 아래 비율에 따라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된다.

- CIT: 설치 서비스: 2% 및 기타 서비스: 5%
- VAT: 서비스: 5%.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1월 12일 제1452/CT-TTHT 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및 관세



### 신규 규정

#### EVFTA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P/O") 제출 기한

재무부가 2021년 1월 25일에 EVFTA에 따른 수입품에 대한 P/O를 제출 기한에 관한 제07/2021/TT-BTC호 시행규칙을 발표하였다. 본시행령은 2021년 3월 11일로부터 발효 예정이다.

따라서, 관세신고 시 P/O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신고 시 P/O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신고서상 늦은 제출내용을 기술해야 하고 EVFTA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 신고일로부터 2년이내 혹은 P/O의 유효기간내에 추가해야 한다.

불가항력인 사정으로 규정한 기한 이후 P/O를 제출하는 경우 경우별로 재무부 (관세총국)가 경우별로 EVFTA 관세율 적용을 결정할 것이다. 기타 늦은 제출의 경우 P/O 유효 기간이내에 상품이 수입되어야 한다.

2020년 8월 01일부터 본 시행규칙의 발효일 이전까지 수입품의 관세신고서에 대하여, 수입품이 EVFTA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EVFTA 규정 및 제111/2020/NĐ-CP 시행령에 따른 세율의 기준보다 초과 납세한 경우 관세 신고자가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세액을 처리 받기 위해 P/O를 제출한다.

*(재무부의 2021년 1월 25일 제 07/2021/TT-BTC 호 시행규칙)*

### 지침 문서

#### EVFTA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P/O) 자체 발급

제38/2018/TT-BTC호 시행규칙에 첨부된 부록 II에 해당하는 EU 원산지 수입품은 제11/2020/TT-BCT호 시행규칙에 따라 EU 공급자로 부터 자체 발급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EVFTA에 따른 혜택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총국의 2021년 1월 18일 제236/TCHQ-GSQL 호 OL)*

6,000EUR 이상의 가치가 있는 수출품에 대한 자체 인증 P/O는 REX 코드가 있는 수출자의 서명이 없어도 여전히 인정 받을 수 있다.

*(호치민 관세국의 2021년 1월 18일 제117/TCHQ-GSQL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및 관세



### 지침 문서 (cont.)

제134/2016/ND-CP호 시행령을 수정.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에 따른 수출가공기업(EPE)에 대한 감사 및 모니터링 조건을 충족함에 대해 관세당국에 의해 인정을 받기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처리

제134/2016/ND-CP호 시행령을 수정.보완하는 시행령의 제28a조 제7 및 제3항에 따르면 본 시행령이 공식적으로 발행하고 발효될 날로 부터 비관세 구역에 대한 관세정책은 수출가공기업 ("EPE")이 투자허가서 ("IRC")를 부여 받은 시부터 적용된다. EPE에 대한 관세 감사 및 모니터링 조건을 충족함에 대해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정서를 받기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규정에 따라 초과 납세금액을 처리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1월 20일 제282/TCHQ-TXNK호 OL 및 2021년 1월 25일 제348/TCHQ-TXNK호 OL)

### 국내 기업에 임대된 EPE의 금형에 대한 관세/VAT 정책

- 관세절차: EPE는 임시수출을 신고하고 국내기업은 임시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계약이 종료된 후, 국내 기업은 재수출을 신고하고 EPE는 이 금형을 재수입을 위해 신고해야 한다.
- 수출입 관세: 국내 기업은 수입관세를 면제 받지 못해서 임시수입 신고할 때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재수출 신고할 때 수입관세를 환급을 받지 못한다.
- VAT: 국내기업이 EPE로부터 임대하여 임시수입을 신고된 금형은 VAT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국내 기업이 계속 사용하면서 재수출 하지 않으면 VAT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금형이 고장나므로 재수출이 불가능하며 규정에 따라 폐기로 처리된 경우 VAT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

(관세총국의 2021년 2월 1일 제 475/TCHQ-TXNK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